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8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송옥주 · 홍기원 · 이원택
소병훈 · 위성곤 · 박지원
전종덕 · 박해철 · 이수진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쿤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는 관제대상선박의 항로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의 관찰확인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주의·경고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의 항

로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 및 속력 기준 등을 포함하는 관제업무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관제시설은 관제대상선박의 항로이탈 여부 및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③ (생략)	<u>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u> ② · ③ (생략)
------------	--